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가합1025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1. A관리단

2. B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권상경

피 고 C 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궁화

담당변호사 조영도

변 론 종 결 2020. 5. 8.

판 결 선 고 2020. 5.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 1) 원고 A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 2) 원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유통업무 설비시설 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원고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 3) 피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시장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이 사건 상가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53.57%) 동의로 결성되어 2006. 11. 23. 서울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다.
- 4) 이 사건 상가는 서울 영등포구 조례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상생발전 합의 작성 경위

-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G 지상에 점포를 개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4. 3. 7. 및 같은 달 10. 아래와 같이 3억 원의 발전기금(이하 ‘이 사건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생발전 합의(2014. 3. 7.자 상생발전 합의와 2014. 3. 10.자 상생발전 합의는 작성일자만 다를 뿐 그 내용과 작성자는 서로 같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상생발전 합의’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상생발전 합의에는 F과 원고 B, 피고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상생발전 합의서

H마트는 지역 쇼핑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E상가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 및 상생협력에 공헌한다.

E상가(영등포구 조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서울시 영등포구 D)는 영등포구 G 지상의 H마트 출점에 다음과 같이 동의하며 상호 협의한다.

1. E상가 소상공인 마을 공동체 발전기금 출연

H마트는 E상가와 상생일환으로 발전기금을 출연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 공헌한다.

가. E상가 소상공인 마을 공동체 발전기금 출연: 3억 원

나. 발전기금은 영등포구청에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완료 전 30%, 착공 시 30%, 개점 시 40%(단 지급일 기준 20일 전 지급 요청 시)를 E상가(I 대표)가 지정하는 계좌에 지급하기로 한다.

2. 직원 채용 시 전통시장 중소기업 가족 및 자녀 우선 채용

H마트는 직원 채용 시 당사 채용조건에 적합한 경우 전통시장 중소기업의 가족 및 자녀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조합의 추천을 적극 반영한다.

3. 지역사회 봉사활동

5. E상가는 상생합의 완료와 관련하여 영등포구청의 관련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향후 추가적인 민원 및 요구를 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분쟁발생 시 E상가 책임 하에 해결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상생발전 합의 당시 원고 관리단의 회장 및 원고 B의 대표이사는 I이었고, 이후 2014. 7.

4. 원고들의 위 대표자가 J로 변경되었다.

3) 한편, F은 이 사건 상생발전 합의와는 별도로 원고 B, 피고 및 K연합회와 사이에 E상가 소상공인 마을 공동체 발전기금을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생발전 합의를 하였고, 위 합의의 내용은 이 사건 상생발전 합의 제1항 중 가, 나항과 같은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상생발전 합의에 기재된 것과 같다.

다. F의 발전기금 출연

1) F은 2014. 6. 13. 이 사건 발전기금 중 1차분(대규모점포개설등록 완료 전 30%) 9,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는 2014. 9. 11. 원고 관리단에게 위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관리단은 같은 날 위 금원 중 6,000만 원을 K연합회에게 지급하였다.

2) F은 2015. 1. 5. K연합회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 B와 피고는 2015. 3. 26. F에게 “상생발전합의서(2014. 3. 10. 수정합의서 체결)에 의거 2차분(착공 시 30%, 9,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상생발전기금 2차분 지급 요청의 건’을 발송하였고, 위 문서에는 ‘입금계좌 사본, 입금계좌 단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입금계좌 단체의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데, 위 서류는 모두 피고 명의의 것이다.

4) F은 2015. 4. 13. 이 사건 발전기금 중 2차분(착공 시 30%) 9,000만 원을, 2017. 9. 11. 이 사건 발전기금 중 3차분(개점 시 40%) 1억 2,000만 원을 각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발전기금은 F이 대규모점포의 입점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이 사건 상가 상인들과의 상생과 피해회복을 위해 원고들에게 출연한 것이나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이 사건 발전기금 중 2, 3차분 합계 2억 1,000만 원을 F으로부터 지급받아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그 이익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이 사건 발전기금 2, 3차분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상생발전 합의의 주된 목적은 F이 대규모점포개설을 위해 이 사건 발전기금을 출연하면, 상대방은 상생합의와 관련하여 영등포구청의 관련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향후 추가적인 민원 및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생발전 합의에 있어서 F의 상대방 당사자는 F으로부터 이 사건 발전기금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고, F의 대규모점포개설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는 원고 B와 함께 이 사건 상생발전 합의에 당사자로 기명 날인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상생발전 합의의 당사자 즉, 이 사건 상생발전 합의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발전기금 출연 조항인 이 사건 상생발전 합의 제1의 나.항 ‘E상가’ 옆에 ‘(I 대표)’라고 병기되어 있으므로 ‘E상가’는 당시 I이 대표로 있던 원고들을 지칭하고, 합의 당사자도 피고가 아닌 원고 관리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생발전 합의 당시 F은 K연합회와도 상생발전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위 상생발전 합의서에도 ‘E상가’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점, F에 이 사건 발전기금 2차분 요청 공문을 보낸 발신주체가 원고 B 및 피고인 점 등에 비추어, 위에서 본 합의서 문구를 들어 이 사건 상생발전 합의 당사자가 원고들만 의미하는 것이라거나 이 사건 발전기금을 원고들에게만 귀속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들은 피고가 F로부터 이 사건 상생발전 합의 제2항의 직원우선채용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상생발전 합의의 당사자로 기명날인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발전기금의 출연이 주된 목적인 이 사건 상생발전 합의에서 직원 우선채용의 배려만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자로 기명날인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들은 당시 원고 관리단 명의의 계좌가 없었고, 세금 등의 문제가 있어 편의상 입금 계좌를 피고 명의의 계좌로 지정한 것일 뿐 피고에게 이 사건 발전기금이 귀속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사용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상생발전 합의의 당사자로서 합의된 절차에 따라 F로부터 이 사건 발전기금 2, 3차분을 취득한 이상 이로써 이 사건 발전기금 2, 3차분을 계속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약정 등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발전기금 2, 3차분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원고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F이 피고에게 이 사건 발전기금 2, 3차분을 지급한 것은 원고 B와 피고의 요청에 따른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원고 B가 피고가 이 사건 발전기금 2, 3차분을 취득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이기도 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단순히 원고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발전기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⑥ 이 사건 상생발전 합의에 따르면, 이 사건 발전기금은 이 사건 상가 인근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고 하는 F이 지역 쇼핑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E상가 상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 및 상생협력에 공헌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이 사건 상가의 현대화와 시장정비 등을 통해 상권의 활성화, 성장 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단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도 이 사건 상가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발전기금을 취득하는 것이 이 사건 발전기금 출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⑦ 피고는 F로부터 1차분 발전기금 9,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원고 관리단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상생발전 합의에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발전기금의 귀속 내지 분배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발전기금 1차분을 원고 관리단에게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상생발전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는 오히려 피고가 F로부터 위 발전기금을 지급받은

이후 원고 관리단과의 사이에 별도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발전기금 2, 3차분까지 원고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유형, 판사 김병진, 판사 김보경